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· 경제부 · 사회부
발 신 경제민주주의21
일 시 2020. 08. 20. (총 12 쪽)
문 의 전화 | 010-3060-1917 이메일 | econdemos21@protonmail.com
제 목 [보도자료]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‘검언유착’ 사건 수사 관련 제2차 질의서 송부

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‘검언유착’ 사건 수사 관련 제2차 질의서 송부

- 제1차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 미흡해 제2차 질의서 송부
- 법무부 검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조항
-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여부
-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휘서신 관련 답변 회피에 대해 적법성 재질의

1.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율 회계사)은 지난 2020.7.3.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송부(<https://econdemos21.com/press/ed200703/>)한 「소위 ‘검언유착’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」에 대한 법무부 답변을 2020.7.22. 수령한 후, 오늘(8/20)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「소위 ‘검언유착’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」를 송부했다. 법무부는 최초 질의서에 대해 본 건 검찰, 본 건 전보조치, 본 건 지휘 등이 모두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.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율 회계사)은 ▲법무부 검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, 추 장관은 한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기 때문에 제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▲법무부는 본 건 검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▲법무부는 본 건 전보 조치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점 ▲법무부는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한 점 등을 중시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였다.

2.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“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” 하였으며, “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” 을 밝혔다.

〈본 건 감찰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〉

1. 김경울님, 안녕하십니까?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(신청번호: 1AA-2007-0072687) 중 감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2.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, 한동훈 차장검사 감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 여부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.

3.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고,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서동재(02-2110-3014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3.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(법무부 직접 감찰)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이며, 이는 동 감찰규정 제15조(조사의 개시등)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·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되,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〈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및 제15조〉

제5조의2(법무부 직접 감찰)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**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**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

가.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(이하 생략)

제15조(조사의 개시등) ①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·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. 다만, **검찰청 소속 공무원(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)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.** (이하 생략)

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다. 따라서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감찰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.

4. 본 건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수증하기 어렵다.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'검언유착'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다.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.6.18.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(더불어민주당, 대전 서구을)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.

<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>

<p>○박범계 위원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. <u>검언유착과 관련해</u> 지금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맞습니까?</p> <p>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그 확인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.</p> <p>○박범계 위원 그래도 위원이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아시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, '박범계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'라는 것보다는 좀..... 맞지요?</p> <p>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</p>	<p>○박범계 위원 맞다고 하시면 될 텐데..... <u>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</u> 지금 있던 말이에요.</p> <p>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예.</p> <p>○박범계 위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했고 인권부에 또 감찰 기능적 조사를 하는데 이 중복되는 문제는 아까 감찰 기능의 형해화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? 이것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?</p> <p>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단은 대체로 감찰에서 직무감찰 도중에 여러 비위나 법령 위반이 있다면 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로 넘기기도 하는 거지요. 그런데 <u>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</u> 수사 상황을 보고서 또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.</p>
--	---

출처: 제379회 국회(임시회)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(2020.6.18.) pp.11~12

5.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'검언유착'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'서울중앙지검의 수사'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다.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"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"라 하여,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

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. 그런데 추 법무부장관은 이처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, 국회에서 “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.6.20.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다.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.7.2.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‘검언유착’ 수사에 직접 관여하였다.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찰이 소위 ‘검언유착’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.

- 6. 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무부는 “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[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절차]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은 것” 이라고 답변하였다.

<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>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2. 「검찰청법」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,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.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입니다.
3. 민원인께서 법무·검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
<담당자 : 법무부 검찰과 김태경(02-2110-4206)>

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 중 하나로서 최초 질의서가 명시적으로 질의한 내용인 ‘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.

- 7. 법무부는 본 건 지휘가 “검찰총장이 (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)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” 는 취지라고 하여,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본 건 지휘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

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하였다.

〈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〉

1. 경제민주주의21(대표 김경울)님, 안녕하십니까?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.
2.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(1AA-2007-0072687)를 통하여, ① 이른바 '채널 A 사건'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 검사를 지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지, ②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정한 수사가 방해되지 않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.
3. 먼저, 본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써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이 분명하고, 검찰청법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.
4. 또한,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'채널 A 사건'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수사지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수사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5.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,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(담당자 곽호광, 02-2110-3549)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 끝.

또한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,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금지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.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.

8. 경제민주주의21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초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고 법무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. 끝.

붙임 1: 소위 '검언유착' 사건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

[붙임 1]

소위 '검언유착' 사건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

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(대표: 김경울 회계사)입니다. 저희 단체는 지난 2020.7.3. 「소위 '검언유착'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」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였고, 이에 대해 2020.7.22. 귀 부의 최종 답변을 수령하였습니다. 이 최종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오니, 아래의 회신 시한과 회신처를 참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신 시한: 2020.9.3. (목)

회신처: econdemos21@protonmail.com

1. 감찰 지시의 적법성

(1)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

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감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?

(2) 이에 대한 귀 부의 답변

1. 김경울님, 안녕하십니까?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(신청번호: 1AA-2007-0072687) 중 감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2.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, 한동훈 차장검사 감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 여부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.
3.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게 되었고,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4.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서동재(02-2110-3014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(3)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

대통령령인 「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의3(감찰관)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·소추·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받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(법무부 직접 감찰)는 “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”고 하여, 이 조항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한편 동 감찰규정 제15조(조사의 개시등)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·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,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습니다.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.

<질의 1-1>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동 감찰규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지시가 아닙니까?

또한 귀 부는 답변에서 본 건 감찰이 “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”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「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함축하였습니다.

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‘검언유착’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.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.6.18.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(더불어민주당, 대전 서구을)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.

〈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〉

<p>○박범계 의원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. <u>검언유착과 관련해</u> 지금 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맞습니까? 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그 확인을 해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. ○박범계 의원 그래도 위원이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아시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셔야지, ‘박범 계 위원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’라는 것보다는 좀…… 맞지요? 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</p>	<p>○박범계 의원 맞다고 하시면 될 텐데…… <u>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</u> 지금 있단 말이에요. 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예. ○박범계 의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했고 인권부에 또 감찰 기능적 조사를 하는데 이 중복되는 분 제는 아까 감찰 기능의 형해화와 또 다른 분 제 아니겠습니까? 이것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? ○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단은 대체로 감찰에서 직무감찰 도중에 여러 비위나 법령 위반이 있 다면 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로 넘기 기도 하는 거지요. 그런데 <u>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</u> 수사 상황 을 보고서 또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.</p>
--	---

출처: 제379회 국회(임시회)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(2020.6.18.) pp.11~12

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‘검언유착’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‘서울중앙지검의 수사’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“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”라 하여,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‘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’에 해당하여 「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, 국회에서 “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”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.6.20.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.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.7.2.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‘검언유착’ 수사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.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.

<질의 1-2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본 건 감찰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·소추·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, 귀 부에서 **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**가 무엇입니까?

2. 전보조치의 적법성

(1)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

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 제청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?

(2) 귀 부의 답변

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.
2. 「검찰청법」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,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합니다.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에 따라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.
3. 민원인께서 법무·검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
<담당자 : 법무부 검찰과 김태경(02-2110-4206)>

(3)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

귀 부는 답변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 건 전보조치(인사 발령)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.

<질의 2-1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? 만일 들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었습니까?

3.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

(1)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

<질의 취지 1> 본 건 지휘서신은 ‘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’ 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·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·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?

<질의 취지 2> 본 건 지휘서신은 ‘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’ 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·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·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?

(2) 귀 부의 답변

1. 경제민주주의21(대표 김경울)님, 안녕하십니까?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.
2.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(1AA-2007-0072687)를 통하여, ① 이른바 '채널 A 사건'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 검사를 지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은지, ②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정한 수사가 방해되지 않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.
3. 먼저, 본 건 법무부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이 분명하고, 검찰청법의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.
4. 또한,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 '채널 A 사건'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수사지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수사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5. 귀하의 법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,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(담당자 곽호광, 02-2110-3549)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 끝.

(3)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

본 건 지휘서신은 아래의 인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두 가지 지휘로 이루어져 있으며, 이 중 제1차 질의서가 질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두 번째 지휘 사항이었습니다.

<본 건 지휘서신의 두 가지 지휘 사항>

1.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‘전문수사자문단’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‘전문수사자문단’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
2.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

그런데 귀 부의 답변은 “검찰총장이 (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)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”는 취지라고 하여 마치 제1차 질의서가 본 건 지휘서신의 첫 번째 지휘 사항인 ‘전문수사자문단 심의’에 대하여 질의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

더 나아가 귀 부의 답변이 지휘서신의 취지라고 요약한 내용은 실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내용이나 함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귀 부의 답변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지휘 사항을 “등 필요

한 조치” 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습니다. 그러나 두 번째 지휘 사항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, 위와 같은 표현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제1차 질의서는 이러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.

귀 부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. 그러나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,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받지 않도록 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이에 다시 질의합니다.

<질의 3-1> 본 건 지휘서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·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?

<질의 3-2> 본 건 지휘서신은 ‘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’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?

<질의 3-3>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사실상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

감사합니다. 끝.